

신규 영업자 안내문



대상 :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, 신고대행업, 인터넷 구매대행업, 보관업

수입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**영업자 준수사항** 등 관련 법령*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
*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, 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, 「식품위생법」 등

영업자는 영업등록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,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 (식품안전나라 www.foodsafetykorea.go.kr)으로 변경등록(신고)해야 합니다.

- 변경등록: 영업자 소재지 * 위반 시 영업등록취소
- 변경신고: 영업자 성명, 영업소 명칭, 영업장 면적 * 위반 시 (1차) 시정명령, (2차) 영업정지 7일, (3차) 영업정지 15일
- 영업등록 이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'사업자등록번호'를 즉시 관할 지방식약청 수입 관리과(또는 식품안전관리과)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귀 사의 수입식품 업무 담당자 교체 등으로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,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수입 영업등록도 방문 또는 온라인 (식품안전나라 www.foodsafetykorea.go.kr)으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
-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→ 기업회원 로그인(인허가번호 로그인) → 우리회사 안전관리 → 자주 찾는 민원 → 수입식품등 영업을 변경 및 폐업신고

※ 폐업 미신고시 매년 위생교육 이수 의무가 지속 발생하며,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매년부과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통관단계 부적합 및 영업정지 처분시 교육명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▶ **위생교육(매년 1회, 3시간)**

위생교육 기관	홈페이지	연락처
한국식품산업협회	www.kfia21.or.kr	☎ 1577-3869
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	edu.khff.or.kr	☎ 1661-2371
한국식품안전협회	safetyfood.or.kr	☎ 02-2051-7006

* 위반 시 (1차) 30만원, (2차) 60만원, (3차) 90만원 과태료 부과

▶ **안전교육(교육명령, 3시간)**

위생교육 기관	홈페이지	연락처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	www.haccp.or.kr	☎ 1599-1102
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	food.hullaro.com	☎ 02-3470-8170

* 위반 시 (1차) 30만원, (2차) 60만원, (3차) 90만원 과태료 부과

공지사항



▶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대상 확인

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



농산물



수산물



축산물



가공식품



건강기능식품



식품첨가물



기구·용기·포장

수입식품 정보마루(impfood.mfds.go.kr) 활용

인터넷 신청 수입식품 관련 전자민원 목록,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, 해외 위해정보, 회수·판매 중지 제품 정보와 부적합 정보, 방사능 정보, 수입식품 관련 법·제도, 공지사항, 보도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 제공



- 수입신고서 작성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
- 수입식품 정보마루 > 우측 배너 '알기쉬운 수입신고·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' 클릭



- 수입신고 구비서류 확인
- 수입식품 정보마루 > 안전정보 > 수입검사 관련정보 > 증명서 제출



- 수입식품 전자심사 24(SAFE-i)* 관련 정보 확인
- 수입식품 정보마루 > 알림정보 > 법령 및 제도 > 수입식품전자심사24(SAFE-i24)
* 통관단계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 신속·자동 수리하는 시스템



- 회수판매중지 수입식품 정보 확인
- 수입식품 정보마루 > 안전정보 > 회수판매중지



-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 확인
- 수입식품 정보마루 > 안전정보 > 수입검사 관련정보 >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

식품 표시 관련 정보 활용

- '식품표시광고 FAQ', '식품 표시봇'
-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 > 식품·안전 > 식품표시광고 > 식품표시광고 FAQ, 식품 표시봇
- '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'
-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/민원인 안내서 > 민원인안내서

- 붙임** 1. 영업자 준수사항
2. 정책메일서비스(PMS) 신청서